

# 세무조사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미치는 영향

심태섭  
단국대학교 상경학부 부교수  
(tsshim@dankook.ac.kr)

본 연구는 세무조사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납세자의 세무신고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로 경리/회계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가상적인 상황에서 실험실 실험을 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세무조사(낮은 경우, 높은 경우)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부여(혜택이 없는 경우, 다음기간의 세무조사의 면제, 성실납부세액공제)이며, 2×3 집단간 실험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과소신고율(=(실제소득금액-신고소득금액)/실제소득금액)로 하였다.

실험결과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세무조사는 실험참여자의 신고행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의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졌다(p=.116). 그러나 실험집단중 세무조사의 수준이 높고,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성실신고세액공제와 같은 경제적인 혜택을 동시에 부여한 집단의 과소신고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력한 세무조사와 함께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한다면,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1. 서론

성실한 세무신고를 유도하려는 세무당국과 세금을 절감하려는 납세자간의 관계는 줄곧 세무회계의 관심사가 되어왔다.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려는 납세자로 하여금 보다 성실한 세무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무당국은 전통적으로 세무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는 세무신고가 전자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에, 세무

당국은 기존의 세무신고/접수 업무보다는 신고자료 분석 및 세무조사 업무에 더욱 치중하여, 종전보다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납세자 가운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sup>1)</sup> 세무조사는 그 정책적 실효성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현진권, 2000).

세무조사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세무조사와 더불어 성실납세자에게 여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시작하였다.<sup>2)</sup> 즉 성실납세자에게는

논문접수일: 2004. 9                      게재확정일: 2005. 5

1) 우리나라 전체 납세자 가운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비율은 소득세의 경우 0.2~0.3%, 부가가치세는 0.1% 수준에 불과하여, 선진국의 조사선정비율 1~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현진권, 2000).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도 세무조사의 선정비율이 낮은 편이다(Alm et al., 1992, p.313).

2) 현재 국세청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모범납세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자를 모범납세자라는 명칭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 5년 이상 계속사업자                      - 3년간 혹자신고한 사업자
- 3년간 위장·가공자료 수수사실 없는 사업자
- 3년간 신고소득률이 양호한 사업자
- 3년간 체납사실(대표자 체납 포함)이 없는 사업자
- 조사결과매출누락, 가공경비계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분식결산/부당내부거래 등이 없는 사업자
- 기타 다른 납세자에 비해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여 주며, 모범세무대리인을 선정하여 당해 세무대리인과 수입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여러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sup>3)</sup> 그러나 이러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각종 혜택의 부여가 납세자의 성실신고유도에 얼마나 효과적인 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각종 혜택이 납세자의 세무신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세무당국이 사용가능한 정책적 수단인 세무조사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인 가를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는 세무당국에게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관련된 기존연구(이환근, 1998; 심태섭, 2004a, 2004b)에 비하여 정교한 연구설계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부여가 납세자의 세무신고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한 기존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실험(laboratory experiment)을 이용하였다. 설문지에 의한 자료수집방법에 비하여 실험실 실험방법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기에(Trochim, 2001, p.192),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 비하여 세무조사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의 효과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일반 직장인으로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연구에 비하여 연구결과를 보다 일반화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기존연구는 설문지를 응답자에게 직접 배포하고 회수함으로써 응답을 요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여자에게 실험결과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경리/회계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84명을 대상으로 여섯 가지의 가상적인 상황에서 실험실 실험을 하였다. 실험결과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세무조사는 실험참여자의 신고행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의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졌다( $p=.116$ ).

본 연구는 우선 연구와 관련된 기존연구를 검토한 후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이어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연구결과와 향후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 II. 기존연구의 검토와 가설설정

본 연구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무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정책 중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세무조사와 최근 우리나라

3) 이러한 혜택이외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세무서내 전용상담창구개설, 납세자의 날 표창,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세무당국이 도입하기 시작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부여의 효과를 알기 위한 것이다. 이에 세무조사와 납세자에 대한 혜택부여의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 2.1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미치는 영향

조세순응(tax compliance)의 연구에서, 세무당국은 전통적으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 법적인 제재수단을 선택하였다(Kaplan et al., 1997). 즉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조세회피가 발견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가산세 등의 경제적 제재조치를 과세당국이 주로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교육심리학의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 근거한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범죄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제재와 발각가능성의 증가는 범죄 등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인간을 그가 행할 앞으로의 행위로 인한 비용과 보상을 계산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Kinsey, 1992, p.259). 이에 따라 어떤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혹하여 그러한 행위에 대한 비용이 보상을 초과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박기정과 조용언, 1998).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 하에서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세무보고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기존연구의 결론은 명확치 않다. Roberts(1998)가 정리한 세무조사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중 네 편의 논문은 영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다른 세 편의 논

문에서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었다.<sup>4)</sup> 이러한 기존연구의 결론은 세무조사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두 가지의 상반된 영향의 결과일 수 있다. 즉 세무조사와 같은 제재조치는 벌금 등을 통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납세자가 스스로 세법을 준수하여 신고하려는 의욕을 줄여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유도하기도 한다(Kinsey, 1992, p.259). 또한 기존연구는 하나의 연구에서 세무조사를 포함한 지나치게 많은 변수의 효과를 동시에 파악하고자 하였기에, 통일된 연구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독립변수의 수가 두 개인 실험실 실험방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효과를 보다 분명히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세무조사의 효과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2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부여가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세무당국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적 처벌 위협의 수단인 세무조사를 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많은 심리학자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는 데 처벌보다는 보상이 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Alm et al., 1992). 최근 우리나라 세무당국도 세무조사와 더불어 성실납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시작하였다. 즉 일정기간 성

4) 우리나라의 경우 이환근(1998), 심태섭(2004a) 등의 여러 연구에서는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신고를 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성실한 세무대리를 수행한 세무대리인을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sup>5)</sup> Alm et al. (1992)은 여러 가지 형태의 혜택부여가 납세자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납세자에 대한 긍정적인 유도수단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임을 발견하였다.<sup>6)</sup> 또한 심태섭(2004b)은 우리나라 세무당국의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의 부여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연구가 많지 않으며, 기존 두 연구의 결과도 서로 상이하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할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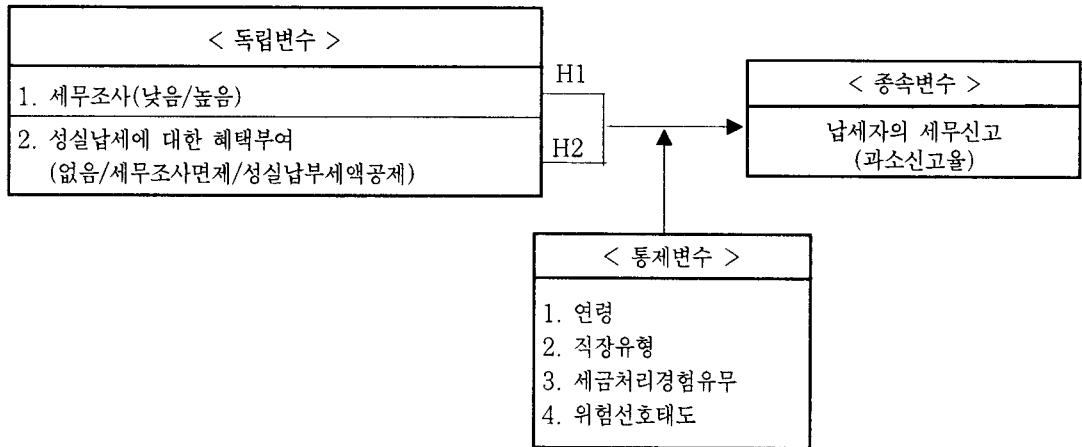
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부여조치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고,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이 정책의 효과를 보다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 세무당국이 성실납세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이 납세자의 세무신고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을 수립하였다.

H2: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3 본 연구의 연구모형

앞에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그림 1> 본 연구의 연구모형



5)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조하시오.

6) Alm et al.(1992)의 연구에서는 세무조사결과 성실납세자로 판명되면 ①추첨을 통하여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일정한 금액의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③세무조사 확률을 감소시키는 경우, 그리고 ④당해 납세자가 속한 실험집단의 전 구성원에게 일정한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나누어 집단내 실험(within-subjects design)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세무조사,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부여)가 종속변수(세무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연령, 직장유형, 세금처리경험유무, 위험선호태도)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한다.

## 2.4 본 연구와 기존연구와의 차이

본 연구는 세무조사와 납세자에 대한 혜택의 부여가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러한 주제의 연구는 많지 않으며, 그 연구의 결론도 모두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기존연구에 비해 보다 정교한 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신빙성 있는 연구결과를 얻고자 본 연구는 노력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세무의사결정과 관련된 기존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 기존 우리나라의 연구(이환근, 1998; 심태섭, 2004a, 2004b)<sup>7)</sup>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독립변수 이외의 변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실험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험실 실험방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기(Trochim, 2001, p.192),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 비하여 독립변수 이외의 변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독립변수의 효과를 보다 분명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기존연구에 비하여 개인의 위험선호태도나 연령 등의

변수가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면서, 독립변수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기존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일반 직장인으로 다양화 하였다. 또한 이들이 실험시에 수행할 과업도 일반 납세자가 세무신고하는 업무로 하여,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업무종사자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대리를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하게 한 기존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연구대상과 실험과업을 다양화함으로써, 기존연구에 비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보다 일반화(generalize)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기존연구는 설문지회수율의 저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에 대한 응답을 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여자에게 실험참여로 인한 결과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실험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신빙성 있는 연구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Alm et al.(1992)에서는 집단내 실험(within-subjects)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실험(between-subjects)방법을 사용하여, 실험참여자의 학습효과를 줄이면서 독립변수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부여의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험실 실험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기존연구에 비하여 세무조사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부여가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7) 이환근(1998)은 벌금부과, 의뢰인의 중요성이 세무대리인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심태섭(2004a)은 세무조사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 그리고 의뢰인의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심태섭(2004b)에서는 세무조사, 성실납세에 대한 혜택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부과가 세무대리인 사무실 근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다. 세 연구 모두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 III. 연구방법

#### 3.1 연구방법의 개요

본 연구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하여 실험실 실험(laboratory experiment)을 사용하였다. 실험방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연구방법이다(Trochim, 2001, p.192). 본 연구의 실험참여자는 각자 가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가정하고, 각 기간별로 본인의 소득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 3.2 실험참여자

본 연구는 주로 경리/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장인 8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현재 I대학 세무회계과의 산업체취탁교육생으로서 정규학생과 동일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야간에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평균 7년(최저 2년, 최고 20년)의 직장근무경력이 있으며, 평균나이 28세(최저 20세, 최고 44세)이다. 여성이 많고(82.1%), 근무부서는 주

로 경리/회계계통(63.1%)나 인사/총무(10.7%)이었다. 근무직장도 일반기업(73.8%)과 세무사사무실(22.6%)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실제 직장근무경험을 통하여 세무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있었으며, 실제 참여자중 56.0%는 세금(법인세, 사업소득세)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었다. 이에 세무신고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실험참여자로 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sup>8)</sup>

#### 3.3 실험설계<sup>9)</sup>

##### 3.3.1 개요

본 연구에서는 2×3 집단간 실험방법(between-subjects design)을 사용하였다. 즉 첫 번째 독립변수인 세무조사는 ①세무조사수준이 낮은 경우와 ②높은 경우의 두 수준으로, 다른 독립변수인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부여는 ①이러한 혜택이 없는 경우, ②다음 기간의 세무조사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그리고 ③성실신고세액공제를 하여 주는 경우의 3가지 수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독립변수의 조합으로 총 6가지 집단(cell)으로 실험설계를 하였으며, 각 집단별 참여자는 14명으로 하였다. 이러한 실험설계는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 본 연구의 실험설계

세무조사 \ 혜택	없음	세무조사면제	세액공제
낮음(1명/14명)	집단1 (14명)	집단3 (14명)	집단5 (14명)
높음(3명/14명)	집단2 (14명)	집단4 (14명)	집단6 (14명)

8) Wartick et al.(1999)은 세무신고에 대한 실험을 할 때, 실험참여자의 나이(경험에 대한 대응치로 해석함)에 따라, 응답경향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세금보고에 관한 실험을 할 때, 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9) 구체적인 실험설계는 세무보고와 관련된 기존연구(특히, Collins and Plumlee(1991), Moser et al. (1995), Worsham(1996), Wartick et al.(1999), Vines and Wartick(2003))에서 사용된 방법을 참조하였다.

### 3.3.2 실험절차

본 연구의 실험은 각 실험집단별로 별도로 진행 하였으며, 실험장소는 대학의 강의실을 사용하였다.<sup>10)</sup> 우선 실험참여자가 실험실인 강의실에 들어 오면서 좌석번호표를 추첨하여 해당 좌석에 앉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자가 실험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때 참여자는 각자를 전자부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가정하며, 각 기간의 소득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어서 실험의 첫 번째 절차로 실험보조요원이 모든 실험참여자가 볼 수 있도록 해당기간의 실제소득금액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실험참여자에게 세무서에 신고할 신고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전년도 신고상황과 독립변수)을 설명하였다.

#### 3.3.2.1 전년도 신고상황

우선 전년도 신고상황에 대한 것을 설명하였다. 즉 “귀하가 주변의 세무사에게 이야기 듣기로, 작년도의 경우 실제소득금액의 70%정도를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국세청에서 비교적 적정한 신고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소득의 50%이하로 신고하는 경우나, 실제소득대로 신고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렇게 전년도 신고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실험참여자에게는 최초로 신고할 소득금액수준에 대한 나름대로 근거를 마련하여 줄 수 있다. 또한 현재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실험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소득신고수준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이 실험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 3.3.2.2 독립변수: 세무조사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다음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세무조사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부여 수준을 조합한 6가지 상황에 대해 해당 집단별로 이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실험참여자가 신고한 신고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참여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소득금액을 많이 신고한 참여자에 대하여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납세자들은 동종업종의 신고율을 참조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무당국의 안내문에서도 동종업종의 작년도 평균신고율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각 실험참여자의 신고소득금액의 상대적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세무조사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부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독립변수의 수준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① 세무조사: 세무조사의 영향을 알기 위한 기존 연구에서는 다양한 세무조사수준을 사용하였다. Moser et al.(1995)은 세무조사수준을 25%, Collins and Pliumlee(1991)에서는 20%로, 그리고 Vines and Wartick(2003)은 10% 등 다양하다. 이러한 세무조사비율은 세무당국이 실제 실시하는 세무조사비율보다 상당히 높다. 실제 세

10) 실험은 총4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첫 번째 날에는 집단6과 집단1, 두 번째 날에는 집단4와 집단3, 세 번째 날에는 집단5,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집단2의 순서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무조사비용을 반영하려면, 상당히 많은 실험참여자가 필요하며 또한 세무조사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무조사 수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세무조사의 효과를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으나, 연구결과가 확대되어 나타날 소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적용한 세무조사수준(10% ~ 25%)을 약간씩 낮추어 보다 현실적인 실험설계를 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실험참여자 14명중 신고소득금액을 상대적으로 적게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가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의 두 수준으로 하였다. 세무조사수준이 낮은 경우는 14명 참여자중 신고소득금액을 가장 적게 신고한 1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세무조사수준이 높은 경우는 신고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순서로 3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일단 실험참여자가 세무조사대상이 되면, 해당 참여자의 실제소득은 100% 노출된다고 가정하고, 이를 실험참여자에게 주시시켰다. 그리고 세무조사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세무조사결과 다음의 두 가지의 추정세액이 부과된다. 우선 미납부세액으로 (실제소득금액-신고소득금액)\*20%이다.<sup>11)</sup> 다음으로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현행 가산세율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납부세액의 30%를 가산세로 가정하였다.<sup>12)</sup> 이에 따라 세무조사대상이 된 참여자는 과소신고소득금액(=실제소득금액-신고소득금액)의 26%(20%+(20%\*30%))를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금액을 “세무조사결과 납부세액”으로 표현하였다.

②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의 효과를 연구한 기존연구는 많지 않다. Alm et al.(1992)의 연구에서는 세무조사결과 성실납세자로 판명되면 ①추첨을 통하여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일정한 금액의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③세무조사 확률을 감소시키는 경우, 그리고 ④당해 납세자가 속한 실험집단의 전 구성원에게 일정한 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설계내용과 현재 우리나라 세무당국에서 모범납세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인 일정기간동안의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반영하여 연구설계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의 참여자중 신고소득금액을 가장 많이 신고한 1인을 성실납세자로 간주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였다. 많은 납세자에게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부여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각 집단별로 소득금액을 가장 많이 신고한 사람에게만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의 수준을 세 가지로 하였다. 첫 번째는 혜택이 없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기간의 다음기간의 세무조사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이다. 이 경우 세무조사면제기간의 신고소득금액이 세무당국에서 정한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였다. 세무당국에서 정한 수준은 세무서의 내부기준으로 참여자에게는 알려줄 수 없음을 설명하였

11)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율을 20%로 가정하였다.

12) 현행 세법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세액의 20%이며,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미납일수×0.03%(연 10.95%)이다.

다. 실제 실험시 세무조사면제기간의 신고소득금액이 해당 실험집단의 참여자중 가장 적지 않다면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세무조사면제기간에 소득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실험결과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수준으로 신고소득금액을 가장 많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납부세액의 10%를 "성실신고세액공제"로 공제하여 주는 방법이다. 이 수준은 납세자에게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각 독립변수의 수준이 조정된 6가지의 상황에서, 각 참여자는 세무당국에 신고할 신고소득금액의 수준을 결정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실험참여자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자의 신고소득금액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도록 하였다.<sup>13)</sup> 본 실험에서는 신고소득금액은 만원단위까지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소득세율은 20%로 가정하였다. 모든 참여자가 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소득금액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각 조건에 해당하는 세무조사와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세무조사결과 납부세액"과 "성실신고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보조요원이 해당 참여자의 소득금액을 집계하는 "소득금액집계표"에 직접 기록한다.<sup>14)</sup>

위의 순서대로 우선 두 기간의 연습을 하고, 본 실험은 동일한 요령으로 총 10회를 수행하였다.<sup>15)</sup> 각 회마다 실제소득금액은 4,000만원에서 시작하여 5,100만원까지 100만원단위로 조정하여 총

12개의 실제소득금액을 마련하여, 이를 임의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소득금액의 제시순서는 각 집단별로 동일하다.

모든 실험이 종료된 후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 변수와 참여자의 위험선호태도를 측정하였다.

### 3.3.3 실험참여자에 대한 성과급(incentive)

각 실험참여자로 하여금 실제상황과 유사한 상황으로 인식하게 하고, 또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여자에 대해 약간의 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실험참여자는 각 기간별 본인의 소득금액을 기록하는 "소득금액집계표"를 작성한다. 우선 각 참여자는 매 기간마다 제시된 실제소득금액을 이 표에 기재한다. 다음으로 본인이 결정한 신고소득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납부세액을 기록한다. 이어서 각 실험조건에 따라 계산된 "세무조사결과 납부세액"이나 "성실신고세액공제"금액은 실험보조요원이 해당 참여자의 표에 직접 기록한다. 이렇게 총 10기의 본 실험절차가 종료가 되면 각 참여자별로 본인의 총잔여소득금액(실제소득금액-납부세액-세무조사납부세액+성실신고세액공제)을 계산하게 된다. 이 잔여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였다. 즉 잔여소득금액이 상위 1위에서 5위까지는 잔여소득금액 1억당 1,300원,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는 1억당 1,000원, 그리고 나머지 참여자는 1억당 700원씩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sup>16)</sup>

13) 실제 실험에서는 참여자가 "소득세신고서" 양식에 본인의 신고소득금액과 20%의 세율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기재하면, 실험의 보조요원이 수거하는 것으로 하였다.

14) 집단6(신고소득이 가장 많은 1명에 대하여 성실신고세액공제, 신고소득이 가장 적은 3인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에 대한 실험과업설명서와 소득금액집계표는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부록 참조).

15) 총 10기간을 수행하는 데 평균 소요시간은 33분(최저 25분, 최고 40분)이었다.

16) 각 개인별로 지급된 금액은 평균 3,910원(최저 2,500원, 최고 5,200원)이었다.

### 3.3.4 통제변수의 선정과 측정

본 연구에서 다룬 두 가지 독립변수 이외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각 참여자의 연령, 직장유형, 세무신고경험여부, 그리고 위험선호 태도를 측정하여, 결과분석시 이들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 독립변수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우선, 연령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Wartick et al.(1999)의 연구에 의하면 세무신고에 대한 실험시, 실험참여자의 나이에 따라 응답하는 경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세 미만의 실험참여자의 경우,<sup>17)</sup> 실험과업으로 세무와 관련된 과업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익숙한 비세무 과업으로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각 참여자의 연령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이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참여자가 근무하는 직장유형을 세무사사무실, 제조업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이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세무사사무실 근무자는 주로 의뢰인의 소득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세무신고수준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다른 참여자는 이러한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어 이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또한 각 참여자가 직장에서나 혹은 개인적으로 본 연구의 실험상황과 유사한 법인세와 사업소득세 처리업무를 담당할 경험이 있는 참여자도 세무신고에 관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것이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다. 이에 세금(법인세·사업소득세)에 관한 업무처리 경험여부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위험선호태도를 통제하였다. 본 연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의 세무보고 행위에 대한 연구이다. 이 분야의 기존연구에서 보면 납세자의 위험선호 태도를 통제하거나,<sup>18)</sup> 위험 중립적으로 조정하기도 하였다.<sup>19)</sup> 본 연구에서는 Young(1985)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각 실험참여자의 위험선호태도를 측정하였다. 즉 다음과 같은 가상의 시나리오로 측정하였다: “귀하는 현재 복권을 한 장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권은 당첨될 경우 10,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즉 0원). 이러한 복권의 가격이 5,000원일 경우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최소한 몇 %가 되어야 이 복권을 구입하시겠습니까?”

## IV. 자료분석

본 연구는 우선 각 실험집단별로 응답경향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고자 한다.

### 4.1 각 집단별 세무신고 경향에 대한 예비분석

각 기간별로 제시된 소득금액의 수준이 상이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각 실험집단간의 비교를 위하여 과소신고율을 이용하였다. 과소신고율은 ((실제소

17) Wartick et al.(1999)의 연구에서 25세 미만의 대부분은 학생으로 사회경험이 없는 참여자이었다.

18) 대표적으로 Carenes et al.(1996), Christensen and Hite(1997)와 박춘래와 김종원(2002)에서 응답자의 위험선호태도를 측정하였다.

19) 대표적으로 Beck et al.(1991)의 연구가 있다.

득금액-신고소득금액)/실제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실제소득금액과 비교하여 과소신고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각 집단별, 각 기간별 과소신고율의 추이는 <표 2>와 같으며,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표 2>와 <그림 2>에서 보듯이 집단6(3명 세무조사, 10%의 성실신고세액공제)의 과소신고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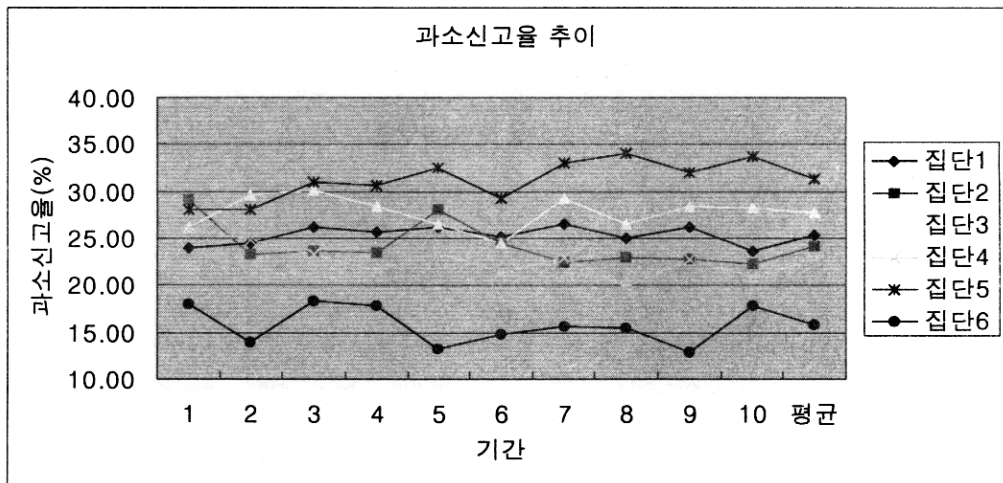
가장 낮아, 이 집단이 가장 성실하게 신고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집단5(1명 세무조사, 10%의 성실신고세액공제)가 가장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무조사비율이 낮은 집단(집단1, 집단3 그리고 집단5)에 비하여 세무조사비율이 높은 집단(집단2, 집단4, 그리고 집단6)의 과소신고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 과소신고율의 추이(실험집단별, 기간별)

집단 \ 기간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집단1	23.92	24.54	26.24	25.72	26.26	25.09	26.56	25.05	26.27	23.71	25.34
집단2	29.07	23.28	23.60	23.40	28.07	24.41	22.51	22.94	22.78	22.27	24.23
집단3	26.11	29.60	30.17	28.37	26.45	24.53	29.28	26.48	28.35	28.17	27.75
집단4	26.07	24.88	23.27	21.59	23.49	21.44	22.98	19.93	22.79	20.95	22.74
집단5	28.12	28.02	30.92	30.69	32.57	29.26	33.08	34.09	31.95	33.65	31.23
집단6	17.99	13.87	18.37	17.83	13.23	14.85	15.62	15.46	12.96	17.82	15.80
평균	25.21	24.03	25.43	24.60	25.01	23.26	25.01	23.99	24.18	24.43	24.52

(주) 집단1부터 집단6의 실험상황은 <표 1>을 참조

<그림 2> 과소신고율의 추이(실험집단별, 기간별)



(주) 집단1부터 집단6의 실험상황은 <표 1>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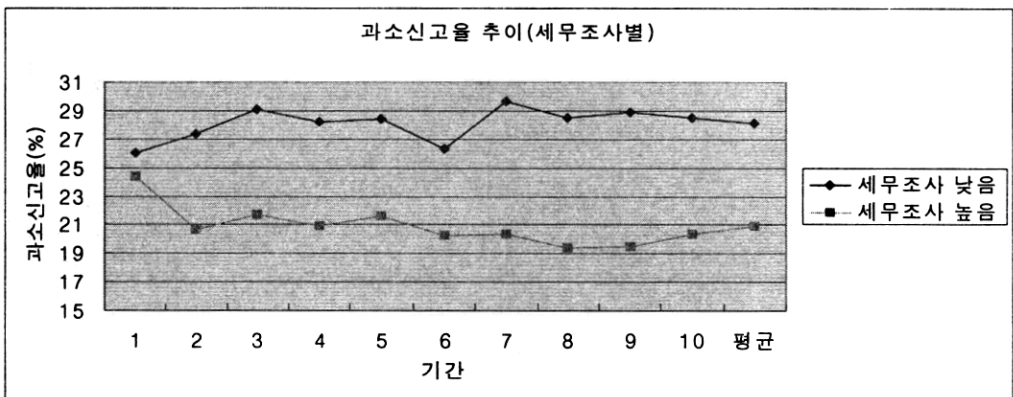
6개의 실험집단을 세무조사비용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의 기간별 과소신고율의 추이는 <그림 3>과 같으며, 두 집단간에는 비교적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6개의 실험집단을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의 세 가지 수준에 따라 기간별 과소신고율의 추이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세 집단간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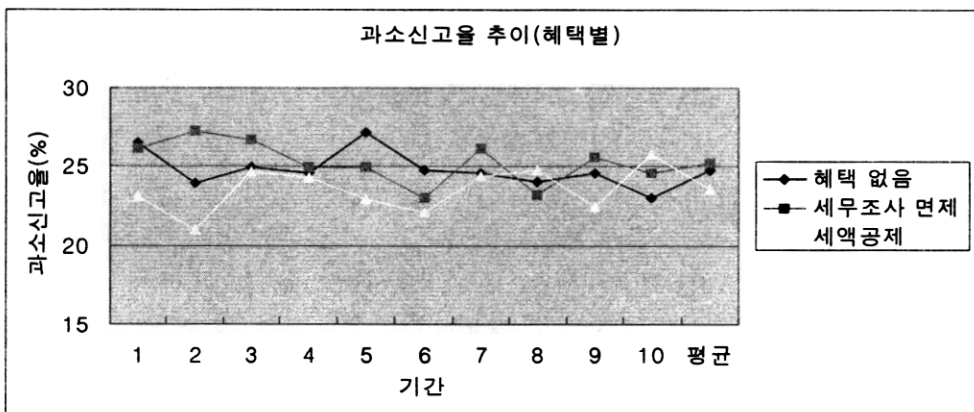
#### 4.2 가설검정

앞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이용하였다. 실험이 종료된 후 실험 참여자에게 나름대로 전략이 수립되기 시작한 기간에 대한 응답결과, 제4기부터(평균 4.14기)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그림 2>에서도 제4기 이후에는 실험참여자의 응답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림 3> 과소신고율 추이(세무조사별)



<그림 4> 과소신고율 추이(혜택별)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마지막 기간인 제10기의 경우, 다음기간에 세무조사를 면제하여 주는 집단(집단3과 4)에서는, 실험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실험자료중 제4기부터 제9기까지의 자료만을 가설검정자료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세무조사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며, 종속변수는 과소신고율을 이용하였다. 또한 공변량으로는 연령, 직장유형, 세금처리경험여부와 위험선호태도로 하였다. 공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상의 공분산분석결과 세무조사는 과소신고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다른 독립변수인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부여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두 독립변수의 상호작용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어서 독립변수의 영향을 알기 위해 다중비교분석(multiple comparison test)을 시행하였다.

우선 세무조사에 대한 다중비교분석을 위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의 각 수준별로 t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듯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없

는 상황에서는 세무조사는 실험참여자의 세무신고에 유의적인 영향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순히 세무조사만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율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세무조사만이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실험참여자들은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지더라도 본인의 신고소득을 세무조사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약간 상향조정하여 신고할 따름이며, 세무조사가 낮은 수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신고할 특별한 유인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있는 다른 두 가지 상황에서는 세무조사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실납세자의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본 연구의 실험참여자들은 세무조사가 높은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위험도 피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보다 성실한 신고를 하려는 경향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성실세액공제와 같은 금전적인 혜택을 부여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성실신고하려는 경향이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가설인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세무보고행위에 미치는

<표 3> 공분산분석 결과

변동요인		자유도	평균제곱	F 값	p 값 <sup>주1)</sup>
주효과	세무조사(A)	1	5922.847	81.635	.000***
	세제혜택(B)	2	156.958	2.163	.116
상호작용	A×B	2	2293.083	31.606	.000***
공변량	연령	1	198.706	2.739	.099*
	직장유형	1	1177.627	16.231	.000***
	업무경험	1	247.882	3.417	.065*
	위험태도	1	519.451	7.160	.008***

주1) \* 및 \*\*\*는 각각 유의수준 10% 및 1%에서 유의적임

주2) 자료중 제4기부터 제9기까지의 자료만을 분석하였음

영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실험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른 독립변수인 세무조사 수준별로 나

누어 다중비교분석을 하였으며,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에서 제공하는 여러 지표중 가장 보수적인 Scheffe와 Turkey의 지표를 이용하였다.<sup>20)</sup>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4> 가설검정: 세무조사효과(유의수준 5%하에서)

세제혜택	세무조사	통계량	평균	t 값	p 값 <sup>주1)</sup>
없 음	낮 음		25.83	1.350	.179
	높 음		24.02		
세무조사면제	낮 음		27.24	3.525	.001***
	높 음		22.04		
성실세액공제	낮 음		31.94	13.872	.000***
	높 음		14.99		
전 체	낮 음		28.34	9.617	.000***
	높 음		20.35		

주1)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임

주2) 자료중 제4기부터 제9기까지의 자료만을 분석하였음

<표 5> 가설검정: 성실납세자혜택의 효과(유의수준 5%하에서)

세무조사 수준	집 단 군 <sup>주1)</sup>	
	1	2
낮 음	혜택없음(25.83%) 세무조사면제(27.24%)	성실세액공제(31.94%)
높 음	혜택없음(24.02%) 세무조사면제(22.04%)	성실세액공제(14.99%)
전 체	혜택없음(24.92%) 세무조사면제(24.64%) 성실세액공제(23.47%)	

주1) 동일한 집단으로 묶일 수 있는 집단을 의미하며, 괄호 안은 과소신고율임

주2) 자료중 제4기부터 제9기까지의 자료만을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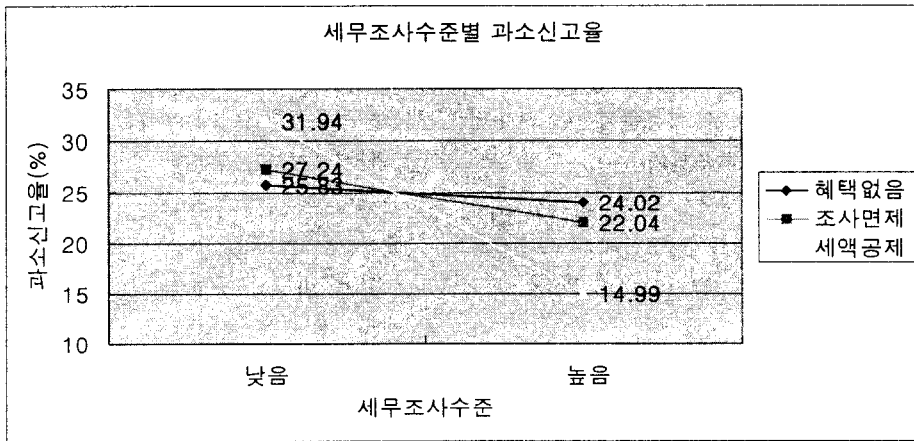
20) 각 지표의 보수적인 정도는 Huck et al.(1974, p.69)을 참조하시오.

〈표 5〉에서 보듯이 전체 집단에 대하여는 성실납세자 혜택조치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수준별로 분석하여 보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없는 집단과 세무조사면제혜택을 주는 집단간에는 과소신고율이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 두 집단과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집단간에는 과소신고율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실납세자혜택부여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런데 〈표 5〉에서 특이한 것은 세무조사수준이 낮은 경우는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는 집단의 과소신고율은 상당히 높았으나, 세무조사가 높은 수준인 경우는 과소신고율이 상당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5〉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성실납세자 혜택의 효과는 세무조사의 수준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세무조사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과소신고율이 오히려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세무조사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의 부여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세무조사확률이 낮은 상황에서 성실신고세액공제의 기댓값이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추가납부세액의 기댓값보다 적기에,<sup>21)</sup> 본 연구의 실험참가자들은 성실신고로 인한 혜택을 받기보다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정도로 신고소득금액을 낮추려는 의사결정을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실신고로 인한 혜택(성실세액공제, 신고세액의 10%)이 성실신고로 인한 납부세

〈그림 5〉 세무조사수준별 과소신고율



21) 세무조사확률이 낮은 상황에서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추가납부세액의 기댓값(①)은(실제소득금액-신고소득금액)×가산세율(26%)×세무조사확률(1/14)이다. 이에 비하여 성실신고세액공제의 기댓값(②)은(신고소득금액)×소득세율(20%)×세액공제(10%)×선정확률(1/14)이다.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건으로 성실신고세액공제의 기댓값이 세무조사로 인한 추가부담세액의 기댓값보다 클 조건(즉 ②>①)을 구하면, 신고소득이 실제소득의 약 93%(과소신고율 7%이하)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세무조사확률이 낮고 성실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의 평균과소신고율은 31.94%로, 이러한 실험상황에서는 성실신고세액공제의 기댓값이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추가부담세액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액의 증가(신고소득금액의 20%)보다 적기에, 실험참여자들이 성실신고하기 보다는 신고소득금액을 낮추려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세무조사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할 때, 과소신고율이 적어진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과소신고율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조사수준이 높은 경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부여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 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성실신고세액공제와 같은 경제적 혜택을 납세자에게 부여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V. 결 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최근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전통적으로 사용하여왔던 세무조사와 더불어 일정기간 세무조사의 면제 등의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세무조사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납세자의 세무신고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로 경리/회계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가상적인 상황에서 실험실 실험(laboratory experiment)을 하였다. 실험결과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세무조사는 실험참여자의 신고행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의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졌다.

두 독립변수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적이어서, 각 독립변수의 효과를 다중비교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없는 집단에서는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다른 두 집단(세무조사 면제, 성실신고세액공제)에서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조사만을 실시하는 경우보다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세무조사의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실납세자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는 세무조사가 낮은 경우는 납세자의 과소신고경향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는 경우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부여는 납세자의 과소신고성향을 상당히 낮추어, 납세자로 하여금 보다 성실한 세무신고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최근 세무당국이 새로이 실시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의 부여는 독자적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지만, 강력한 세무조사와 더불어 세액공제와 같은 경제적 혜택을 성실신고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성실한 세무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험실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것이기에 본 연구의 결론을 일반화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러 변수 가운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여러 변수가 있다. 현실과 다른 단일세율구조, 현실보다 매우 높은 세무조사수준,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그리고 현실과는 다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부여 등의 여러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세무당국을 포함한 정책당국에 정책적 제안을 하는 데는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

구의 실험참여자의 구성이 우리나라 납세자를 대표하는 데는 의문이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앞으로 실험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준을 다양화 하고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때, 본 연구의 결론을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러한 일반화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왔던 세무조사와 최근 시행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부여의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박기정 · 조용언 (1998), "환경요인과 개인특성요인이 세무대리인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학 연구**, 1 (창간호), 53-93.
- 박춘래 · 김종원 (2002), "세무전문가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11(2), 89-109.
- 심태섭(2004a),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조사 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의뢰인의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33 (1), 297-320.
- 심태섭 (2004b), "세무대리업무 실무종사자의 성실세무신고 유도정책에 대한 효과분석," **회계학연구**, 29 (3), 127-151.
- 이환근 (1998),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실험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현진권 (2000),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평가와 미래," **재정포럼**, 45, 88-111.
- Alm, J., B. R. Jackson, and M. McKee (1992). "Deterrence and Beyond: Toward a Kinder, Gentler IRS," in J. Slemond (Eds.), *Why People Pay Taxes: Tax Compliance and Enforcement*,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311-329.
- Beck, P. J., J. S. Davis, and W. Jung (1991), "Experimental Evidence on Taxpayer Reporting Under Uncertainty," *The Accounting Review*, 66 (3), 535-558.
- Carnes, G. A., G. Harwood, and R. Sawyers (1996), "The Determinants of Tax Professionals' Aggressiveness in Ambiguous Situations," *Advances in Taxation*, 8, 1-26.
- Christensen, A. L. and P. A. Hite (1997), "A Study of the Effect of Taxpayer Risk Perceptions on Ambiguous Compliance Decision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 (1), 1-18.
- Collins, J. H. and R. D. Plumlee (1991), "The Taxpayer's Labor and Reporting Decision: The Effect of Audit Schemes," *The Accounting Review*, 66 (3), 559-576.
- Huck, S. W., W. H. Cormier, and W. G. Bounds, Jr. (1974), *Reading Statistics and Research*, New York, NY, Harper & Row, Publishers, Inc.
- Kaplan, S. E. and K. J. Newberry, and P. M. J. Reckers (1997), "The Effect of Moral Reasoning and Educational Communications on Tax Evasion Intention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 (2), 38-54.
- Kinsey, K. A. (1992), "Deterrence and Alienation Effects of IRS Enforcement: An Analysis of Survey Data, in J. Slemond (Eds.), *Why People Pay Taxes: Tax Compliance and Enforcement*,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59-305.
- Moser, D. V., J. H. Evans III, and C. K. Kim

- (1995), "The Effects of Horizontal and Exchange Inequity on Tax Reporting Decisions," *The Accounting Review*, 70 (4), 619-634.
- Roberts, M. L. (1998), "Tax Accounts' Judgement/ Decision-Making Research: A Review and Synthesi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0 (1), 78-121.
- Trochim, W. M. K. (2001), *The Research Methods Knowledge Base*(2nd ed.), Cincinnati, OH, Atomic Dog Publishing.
- Vines, C. C. and M. L. Wartick (2003), "Tax-Reporting Implications of Asymmetric Treatment: Direct Subsidies vs. Tax Deduction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5 (1), 87-99.
- Wartick, M. L., S. A. Madeo, and C. C. Vines (1999), "Reward Dominance in Tax-Reporting Experiments: The Role of Context,"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1 (1), 20-31.
- Worsham, R. G. Jr. (1996), "The Effect of Tax Authority Behavior on Taxpayer Compliance: A Procedural Justice Approach,"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8 (2), 19-39.
- Young, S. M. (1985), "Participative Budgeting: The Effects of Risk Aversion and Asymmetric Information on Budgetary Slack,"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3 (2), 829-842.

부록: 실험설명서(10%의 성실세액공제, 3명에 대한 세무조사경우)

### 〈 실험절차 〉

귀하는 소규모 전자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고 가정합니다. 이 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귀하와 귀하 가족의 유일한 소득으로 가정합니다. 귀하가 속한 업종에는 총 15개의 업체(본 실험의 참여자가 운영)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각 업체의 소득금액은 모두 동일합니다.

### 〈 실험과업 〉

1. **실제소득금액의 제시:** 본 연구의 보조요원이 이미 마련된 여러 개의 소득금액중 하나를 임의로 골라, 모든 참여자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참여자는 이 금액을 해당기간의 실제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귀하는 귀하에게 제시된 실제소득금액을 <소득금액 집계표>의 각 기간의 실제소득금액(①)의 “연습 1기”에 이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금액은 귀하의 업체에서 발생한 올해의 실제 소득금액입니다.

2. **신고소득의 결정:** 다음으로 귀하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단계입니다. 우선 귀하는 다음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귀하의 신고소득금액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1) 전년도 신고상황: 귀하가 주변의 세무사에게 이야기 듣기로, 작년도의 경우 실제소득금액의 70%정도를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국세청에서 비교적 적정한 신고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소득의 50%이하로 신고하는 경우나, 실제소득 대로 신고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2) 추가 고려요인: 참가자들이 신고한 신고소득

금액을 비교하여, 그 신고소득금액이 가장 적은 3명에게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1명에 대하여는 10%의 세액공제를 하여 줍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고소득금액이 가장 적은 3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귀하의 실제 소득금액이 100% 발견된다고 가정합니다.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다음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 a. 과소 납부된 세금: (실제소득금액 - 신고소득금액)\*세율(20%)
- b. 가산세: a 금액의 30%(=(실제소득금액 - 신고소득금액)\*세율(20%)\*(30%))

② 신고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1명에 대하여는 신고한 세액의 10%를 “성실신고세액공제”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이상의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이제 귀하는 귀하의 소득을 얼마로 세무서에 신고하실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즉 <소득세신고서> 양식에 귀하의 신고금액을 만원단위까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신고소득금액에 20%의 세율로 계산한 세금금액과 귀하의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또한 이 금액을 귀하의 <소득금액집계표>에 납부세액(②)에 기록을 하십시오.

다 기재하신 분은 <소득세신고서>를 반으로 접어 남에게 노출이 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면 귀하에게 불이익이 갑니다). 단 신고금액의 결정은 3분 이내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작성된 <소득세신고서>는 보조요원이 수거할 것입니다.

3. **세무조사대상과 세무조사면제자의 선정:** 신고된 총 14장의 <소득세신고서>상의 소득금액을

큰 순서부터 배열하여,

① 가장 적은 금액을 신고한 3명에 대하여 보조요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세무조사결과 실제 발생소득을 근거로 다음의 두 금액이 귀하에게 부과됩니다.

- a. 과소 납부된 세금: (실제소득-신고소득)\*세율(20%)
- b. 가산세: a 금액의 30% (= (실제소득-신고소득)\*세율(20%)\*(30%))

② 신고소득금액을 가장 많이 신고한 1명에 대하여는 "성실신고세액공제"로 신고한 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줍니다.

이렇게 계산된 두 금액을 보조요원이 귀하의 <소득금액집계표>에 기재합니다.

4. 잔여 소득금액의 계산: 귀하의 <소득금액집

계표>에 잔여소득금액(⑤)은 (①-②-③+④)입니다.

5. 이상의 방법으로 연습1기와 연습2기의 연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을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다른 참여자와는 어떠한 대화도 하시면 안 됩니다.

6. 위의 순서로 총 10기의 실전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절대로 다른 참여자와 대화를 하거나, 다른 참여자의 결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7. 그러면 지금부터 연습1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제시될 실제소득금액은 귀하의 유일한 소득이며, 앞에 언급한 전년도 신고상황과 세무조사실시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귀하의 신고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소득금액집계표: 집단6 >

(단위: 원)

사업년도	①실제소득금액	②납부세액	③세무조사납부액	④세액공제	⑤잔여소득금액 (①-②-③+④)
연습 1 기		(-)	(-)	(+)	=
연습 2 기		(-)	(-)	(+)	=
총 계					
제 1 기		(-)	(-)	(+)	=
제 2 기		(-)	(-)	(+)	=
< 제3기부터 제9기는 위와 동일함 >					
제 10 기		(-)	(-)	(+)	=
총 계					⑥

- ※ 실제소득금액(①)과 납부세액(②)은 본인이 직접 기록 하십시오.
- ※ 납부세액(②)은 <소득세신고서>의 납부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세무조사납부액(③)과 성실신고세액공제(④)는 보조요원이 기록합니다.
- ※ 잔여소득금액(⑤)은 (①-②-③+④)입니다.
- ※ 귀하에게는 총계의 잔여소득금액(⑥)에 따라 소정의 수교료가 지급됩니다.

위의 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자(번호): (서명)

## The Effects of Tax Audit and Rewards on Tax Reporting Decisions

Tae Sup Shim\*

### Abstract

To date traditional methods for increasing tax compliance have dominantly emphasized tax audit. However, as some researchers in the field of psychology revealed that rewards might be more effective than punishment in eliminating undesired behaviors, great interest and attention came to b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inducement and tax compliance. Recently, the Korean tax administration (National Tax Service: NTS) has begun to offer rewards to the taxpayers who comply with tax laws very faithfully.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identify the effects of both punishment and rewards to taxpayers on tax reporting decision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ax audit and rewards on tax reporting decisions.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a rigorous research efforts designed to determine whether (1) tax audit level (low or high) and (2) differential rewards (no reward, audit exemption, or tax credits for faithful taxpayers) affect tax reporting decisions (measured by  $(\text{actual income} - \text{reporting income})/\text{actual income}$ ). This study conducted a  $2 \times 3$  between-subjects experiment on 84 Korean taxpayers. The subjects were asked to determine how much of their business income to report to the NTS, when they prepare their tax return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tax audit has an effect on the subjects' tax reporting decisions while the differential rewards do not. The result supports that tax audit, the traditional measures the NTS has used, could improve tax compliance. On the other hand, it can not be confirmed that the differential rewards to taxpayers significantly affect tax reporting

---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Dankook University.

## 심태섭

decisions. Nevertheless, the study illustrates that the differential rewards could improve the tax compliance of Korean taxpayers under some conditions. The significant implication of the finding is that, under the circumstance of high audit probability, the additional implementation of the financial rewards to faithful taxpayers may improve tax compliance.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that the NTS should provide the faithful taxpayers with financial rewards, such as tax credits, as well as tax audit to lead better taxpayers' compliance.

Key words: tax compliance, tax audit, rewards, tax reporting decision